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38718 등록세및압류처분해지청구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19. 선고 2015구합589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1.
판 결 선 고	2016. 10.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2,242,760원, 가산금 1,049,400원, 지방교육세 776,060원, 가산금 363,090원 합계 4,431,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redacted]시"를 "피고"로, "피고 [redacted]구청장"을 "[redacted]구청장"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1. 처분의 경위, 3.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4.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21행까지, 제6면 제4행부터 제6면 제20행까지, 제6면 제21행부터 제7면 제14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김복형

판사 남양우